

# Tax News Flash

July 2020

## Value Added Tax on Offshore E-Commerce Transactions Implementing Rules

DGT는 2020년 6월 25일자로 동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국세청규정 PER-12/PJ/2020 (“PER-12”)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세지역 외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와 관련하여 Law No. 2 Year 2020와 재무부 규정 No. 48/PMK.03/2020 (“PMK-48”)을 보완하고, PMK-48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공합니다.

PMK-48은 과세지역 외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로 무형의 과세재화 및/또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ay 2020 Tax News Flash](#)에서 부가세 적용 대상 거래 유형 및 PMK-48과 관련된 기타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재화구매자/용역이용자가 지불한 대가에서 부가세를 징수해야 할 의무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제공업체(역내/역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역외 사업자, “ECBP”)에게 있으며, ITO는 ECBP를 부가세 징수의무자로 지정합니다.

### Qualifications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ECBP가 부가세 징수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내 재화구매자/용역이용자와의 거래가격이 1년 동안 IDR 6억을 초과하거나, 1개월 동안 IDR 5천만을 초과; 그리고/또는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인도네시아로부터의 트래픽이나 사이트방문자 수가 1년 동안 12,000을 초과하거나, 1개월 동안 1,000을 초과.

ECBP는 부가세 징수의무자로 지정된 것을 DGT에 온라인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며, 통지를 수신한 DGT는 해당 ECBP를 부가세 징수의무자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Appointment and Revocation

DGT는 부가세 징수의무자로 지정된 각 ECBP에 decision letter를 발급할 예정이며, 이는 발급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초부터 유효합니다. 이 ECBP는 또한 DGT로부터 Tax Identification Number Card(“TINC”, “Kartu Nomor Identitas Perpajakan”)와 등록통지를 받게 된다.

만약 decision letter에 부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ECBP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GT는 요청에 따라 수정할 것이나 지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지정은 ECBP가 더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DGT의 고려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취소는 취소에 대한 decision letter가 발급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초부터 유효합니다.

### Compliance Obligations

#### 1. Account activation

지정이 되면, ECBP는 DGT 온라인 계정을 활성화하고 부가세 징수의무자로의 지정이 유효하기 전에 DGT의 DB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2. VAT collections

ECBP, 부가세 징수의무자는 인도네시아의 재화구매자/용역이용자로부터 공급가액(10% 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10%의 부가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징수되지 않으면 재화구매자/용역이용자는 부가세법 문단 3A에 따라 부가세를 지불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ECBP는 부가세 징수 및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세징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이는 부가세액과 기지급됨을 명시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청구서(billing), 주문영수증(order receipt)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의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세징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등한 서류로 판단되며, 다음의 재화구매자/용역이용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매입세금계산서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 이름과 Tax Identification Number(“TIN”, “Nomor Pokok Wajib Pajak”/“NPWP”); 또는
- DGT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

#### 3. Payments of VAT collected

징수된 부가세는 온라인으로 납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부가세가 발생한 월(과세기간)의 다음 월말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DGT의 e-billing 시스템을 통한 납부를 위해 ID Billing 코드를 생성해야 하며, 납부는 DGT 시스템에서 ECBP가 선택한 대로 IDR, USD 또는 DGT가 규정한 다른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4. VAT reporting

VAT reports는 분기별로,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월별 인도네시아 내 재화구매자/용역이용자의 수;
- 부가세를 제외한 재화구매/용역이용에 따른 대금징수액;
- 부가세징수액; 그리고
- 부가세 징수의무자의 이전납부액

또한 DGT는 각 부가세 징수증에 기재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상세한 VAT reports를 매 역년(曆年)마다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일별 인도네시아 내 재화구매자/용역이용자의 수;
- 부가세를 제외한 재화구매/용역이용에 따른 대금징수액;
- 부가세징수액;
- 재화구매자/용역이용자의 이름과 NPWP
- 그리고 가능하다면;
-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또는

재화구매자/용역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정보 이러한 보고는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ECBP가 선택한 통화를 사용해서 DGT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DGT는 제출이 완료되면 별도의 문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 7. VAT overpayments

ECBP가 부가세를 징수하고 재화구매자/용역이용자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세를 자진납부하면, 그 부가세는:

- 다른 세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overbook;
- 납부하지 않았어도 되는 세금의 환급으로 요구;
- 매입부가세로 공제; 또는
-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하는 비용으로 청구

#### KPMG Notes:

- PER-12에 따르면, 부가세 징수의무자로서의 ECBP의 의무는 DGT가 appointment letter를 발행하고 1개월 내에 시작됩니다.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부가세 징수가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 ECBP는 DGT에게 부가세 징수의무자로서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DGT에 통보할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므로 DGT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처벌로 이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 PER-12는 ECBP를 식별하고 appointment letter를 전달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ECBP가 인도네시아의 재화구매자 및 용역이용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 PER-12는 ECBP가 제출하는 VAT reports의 template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제공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 부가세 징수 및 신고를 하지 않는 ECBP, 부가세 징수의무자는 인도네시아 세법 및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으로의 인터넷 접속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역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appointment letter를 받은 후에 대금청구, 징수 및 납부와 관련 송금,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된 회계시스템의 수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PMK-48 및 PER-12를 적시에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 May 2020 Tax News Flash에서 언급했듯이:
  - 역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10%의 부가세와 관련된 프로세스, 행정처리 및 reporting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을 위한 현재의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역외의 법인을 부가세 징수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과세체계의 새로운 개념으로, 향후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Contact us

## **KPMG Advisory Indonesia**

### **Tax Services**

33<sup>rd</sup> Floor, Wisma GKBI  
28, Jl. Jend. Sudirman  
Jakarta 10210, Indonesia  
**T:** +62 (0) 21 570 4888  
**F:** +62 (0) 21 570 5888

## **Abraham Pierre**

### **Partner In Charge, Tax Services**

Abraham.Pierre@kpmg.co.id

## **Susanto**

### **Head of Clients and Markets**

Susanto@kpmg.co.id

## **Jae Young Lee**

### **Korean Business Desk**

Jaeyoung.Lee@kpmg.co.id

**home.kpmg/id**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0 KPMG Advisory Indonesia, an Indonesian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